

외래어의 표준 발음과 어문 규범

이 은 경
(홍익대학교)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외래어의 표준 발음을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다. 현재 외래어의 표준 발음은 어떤 규정에도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대대적으로 어문 규범을 정비하여 고시한 1988년 이래로 정책 당국은 외래어의 표준 발음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나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외래어의 발음을 규범의 바깥에 방치해 두고 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도 지침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언중들은 외래어를 구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외래어 표기법과 표준 발음법 규정의 해석과 보완을 통하여 외래어의 표준 발음을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외래어의 표준 발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표준 발음법에서도 규정되지 않았다.¹⁾ 표준 외래어가 없기 때문에 표준 외래어의 표준 발음도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이 표준어 모음집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조남호(2000)에서 등재에서 제외한 외래어에 대해

1) 국립국어원(1999:8)의 일러두기에서는 외래어의 발음 정보 표시에 대해 “외래어와 외래어가 포함된 복합어에는 발음을 제시하지 않았다. <예> 온라인(on-line) [깡킴]”과 같이 기술하였다.

비표준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보더라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외래어는 표준 외래어라고 보아야 한다(차재은 2007:370, 각주 13). 본고에서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외래어의 뜻풀이가 ‘○○의 잘못’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가 표준 외래어라는 점을, 그리고 이 사전에 제시된 외래어가 표준 외래어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

그런데 표준 외래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표준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외래어의 표준 발음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하여 표준 외래어의 표기만으로도 표준 발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표준발음법의 규정을 준용할 경우에는 표준 외래어의 표준 발음을 규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표준 발음법에는 그러한 명시적인 기술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표준 발음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표준국어대사전이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발음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외래어에 대해서만 표준 발음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외래어의 발음 정보는 표준 발음법이나 표준국어대사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외래어의 발음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김세중(1996), 임동훈(1996), 임흥빈(1997), 김하수(1999), 이홍식(2001), 정희원(2004), 연규동(2006), 김선철(2008), 김정우(2008), 박정진(2008), 김창진(2009) 등은 외래어 표기법의 성격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외래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임흥빈(1996)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에서는 한국어에 완벽하게 수용된 외국어 단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속에서

2) 2011년에 기준 표준어인 ‘자장면’에 ‘짜장면’을 추가한다는 국어심의회의 결정이 있었다. 이것은 국어심의회가 ‘자장면’이 표준어로 인정되어 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국어심의회에서 ‘자장면’을 표준어로 심의한 적은 없는 듯하다. 김선철(2008:217)에 따르면 1995년 7월 14일 제8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에서 ‘자장면’이라고 표기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표준어를 사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국어심의회는 법에 명시된 기구이지만 이 위원회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그럼에도 이 위원회에서 정한 표기를 국어심의회에서 표준어로 간주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이 위원회가 제시한 표기가 표준어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되는 외국어 단어는 잠재적으로 외래어에 속한다고 보았다. 김세중(1993)은 외래어의 발음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었고 차재은(2007)이 본격적으로 외래어의 표준 발음 문제를 다루었다.

외래어의 발음에 대한 논의들은 규범의 입장에서 외래어의 발음을 다루기 보다는 음운론적 기술이나 설명의 대상으로서 논의한 업적이 대부분이다. 주로 영어 음운론 쪽에서 영어 외래어가 한국어에 수용될 때 한국어의 음운론에 맞추어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시도한 논의들이 많다. Oh, M.(1992, 1996), Hirano, H.(1994), Lee, P.(1995), 강옥미(1996), Yoo, H.(1996), Kang, H.(1996, 1999), 홍혜정(1997), 박선우(1998), Cho, H.(1998), 구분석(1999), 최유경(2000), 이석재·최유경(2001), Lee, H.(2001), 김태미(2002), 강현숙(2002), Kang, Y.(2003), Lee, J.(2004), 민아영(2005) 등의 논의는 주로 음운 이론, 특히 최적성 이론에 기대어 비슷한 환경에서 차이가 나는 외래어의 발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외래어 수용의 과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단순히 ‘외국어→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의 음운론적, 음성적 특징을 어떻게 한국어 화자가 인식하느냐 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으며³⁾ 음성적인 측면 외에 표기가 미치는 영향이나 일본을 통한 유입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상도·이영순 2007, 이석재·최유경 2001, 최유경 2000).

이상에서 보듯이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재은(2007)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차재은(2007)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래어의 표준 발음을 정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⁴⁾ 다만 차재은(2007)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한 표준 발음 선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고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을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에서 외래어의 표준 발음 문제를

3) 강현숙(2002)는 Silverman(1992)에서 외래어가 차용되는 음운론적 과정이 인식단계와 음운 규칙 적용 단계의 2단계를 거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외국어가 외래어로 차용될 때 생기는 음운론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4) 외래어의 발음에 대한 논의로는 유만근(1988), 김세중(1993), 김상준(1996) 등이 있으나 외래어 표기와 현실 발음 사이의 괴리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다루고자 한다. 실제 발음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결국 표기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외래어 표기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I. 외래어와 표준어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먼저 표준 외래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표준어가 정해져야 표준어의 표기와 발음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의 제1장 총칙 제1항은 이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⁵⁾

- (1)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면 표준어 규정 속에 외래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필요가 있다. 표준어 규정 제1장 총칙에는 다음의 두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 (2) 가.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그런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가 어떤지가 문제가 된다. 제1항은 고유어나 한자어에만 적용되고 외래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3) 외래어는 표준어 사정의 중요한 대상이다. 물밑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는 그때 그때 사정하여 국어의 일원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정에서는 외래어는 보류하였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5) 어문 규범과 해설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를 참조하였다.

인식하면서도 짧은 시일에 끝내야 하는 이번 사정에서 성격이 다른 외래어의 사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외래어는 수시로 밀려 오므로 꼭 유동적인 성격을 지녀, 앞으로 그때 그때 적절히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해설을 보면 총칙의 제1항이 외래어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볼 수는 없다. 표준 외래어를 사정하는 작업을 뒤로 미루었다는 것이지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에서 외래어가 예외라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외래어 가운데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은 고유어나 한자어와 다르게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 해설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4)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 7.)로 공표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의 고유 명사의 표기까지 포괄하는 표기법으로서, 표준어 규정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 해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외래어 표기법이 표준어 규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외래어 표기법은 규범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가. 외래어 표기법은 무엇을 위한 규범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외래어 표기법은 표준 외래어 표기에 대한 규정이 아닌지, 그렇다면 왜 만들었는지, 외래어 표기법은 발음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김선철(2008:212-3)에서는 임동훈(1996)과 이홍식(2001)이 외래어 표기법이 표준 외래어를 결정하는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잠재적 외래어까지를 표기 대상으로 삼는 외래어 표기법이 국어 어휘 요소로 간주되는 표준어를 사정하는 역할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바람직하건 아니건 표준어 사정 원칙의 정신에 따르면 외래어의 사정이란 피치 못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고유어나 한자어로 다듬어 사용할 것을 가르는 행위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잠재적 외래어를 표기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표준어를 사정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새로운 단어가 한국어에 유입될 때 여러 가지 어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결국 외래어 표기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외래어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외래어의 어형을 정할 때 실제로 언중들이 사용하는 어형보다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어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새로운 단어는 언중에게 널리 퍼지기 전에 외래어 표기가 정해지는 일이 많다. 특정 직업군의 언중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도 그것이 전체 언중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입 초기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어형을 선택한다면 그때 외래어 표기법은 표준어형을 선택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외래어 전체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외래어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외래어 표기법이 그 단어를 순화하지 말라는 규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임동훈(1996)과 이홍식(2001)은 외래어 표기법을 일종의 표준 외래어 사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선철(2008:213)은 김정우(2002)의 논의대로 외래어 표기법이 다른 언어의 어휘 요소에 대한 음차 표기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도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언어의 어휘 요소에 대한 음차 표기 방법이 규범의 형식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라면 굳이 국가가 나서서 규범의 형식을 빌려 제시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만약에 그렇다면 이름이 외래어 표기법 권장안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이를 권장안이라고 명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고 다른 규범처럼 고시의 형태로 제시했다면 외래어 표기법 역시 규범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이 발음과 관련이 없다면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표기된 단어는 눈으로만 보는 대상인가. 누군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자료를 주고 읽으라고 한다면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인가.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이 단순히 외국어를 표기하는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외래어 표기법과 한글 맞춤법의 관계를 보아도 할 수 있다. 한글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1항과 제3항은 다음과 같다.

- (5) 가.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여기서 제1항과 제3항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등한 관계라서 한글 맞춤법이 외래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한글 맞춤법의 어떤 조항이든 외래어 표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순서로 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래어 표기법이 대상으로 하는 단어도 표준어인 외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외래어 표기법은 표준어가 아니거나 표준어와는 무관한 외래어를 표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어문 규범을 만들면서 표준이라는 영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처리인 것이다. 다음의 한글 맞춤법 해설을 보더라도 외래어 표기법이 한글 맞춤법에 부록처럼 속하는 규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6) 외래어 표기도 여기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표기에서는 각 언어가 지닌 특질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래어 표기법을 따로 정하고(1986년 1월 7일 문체부 고시), 그 규정에 따라 적도록 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표준어 가운데 외래어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있어서 따로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이 표준어와는 무관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외래어 표기법이 규범이라는 점으로 보나, 한글 맞춤법에서 하나의 조항으로 따로 설명한 내용을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의 부록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외래어 표기법에 표기 전반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고 한글 맞춤법에서 외래어는 따로 표기법을 만든다고 한 것 역시 어떤 면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큰 틀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외래어의 특성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한글 맞춤법의 제1장 총칙의 제1항과 제2항이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외래어 표기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로봇]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를 ‘로봇’으로 적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로봇’이 환경에 따라 달리 소리 나지만 어법에 따라 ‘로봇’이라고 적는 것이다. 또한 제2항의 띄어쓰기 규정은 단어별로 띄어 쓸을 원칙으로 하는데 외래어 역시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의 일반적인 규정 속에 외래어 표기법이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외래어 표기법의 몇몇 규정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기술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모와 음소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외래어 표기법에서 제1장 표기의 원칙의 제2항은 다음과 같다.

(7)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이때 ‘기호’는 한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글 이외의 기호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법이 아니라면 다른 문자로 적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왜 ‘기호’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실제 외래어 표기법의 내용을 보면 한글로 적은 것은 또는 한글에 대응하는 것은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의 음소이다. 이는 제2장 표기 일람표에 잘 드러나 있다. [표 1]은 국제음성기호와 한글자모 대조표이고 그 이후는 각 언어의 자모와 한글 대조표이다. 제2항의 내용대로라면 외래어 음운과 한글의 대조표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외래어가 확정되어 있다면 한글 대조표는 이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영어 ‘chocolate’에 대한 외래어가 [초콜릿]이라고 한다면 이를 한글로 옮기면 ‘초콜릿’이 된다. 물론 여기서 ‘초콜릿’으로 표기하게 되는

것은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반영할 경우이다. 그러니까 제2항은 필요 없는 규정이 되는 것이다. 마치 한글맞춤법에서 표준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규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제2항은 ‘외국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는 조항으로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2장 표기 일람표가 왜 외국어 자모와 한글 자모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는지가 바로 이해된다. 바로 이 점이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표기법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그럼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표기법인가.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있음에도 외래어 표기법은 근본적으로 외국어 표기법이 될 수 없다. 표기는 음성으로의 변환을 전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음성언어가 먼저 존재하고 그 음성언어를 시각화하는 것이 문자라고 한다면 음성언어를 기록한 문자는 음성으로 변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표기된 단어들은 다시 그 언어로 변환되지 않는다. 그러한 규칙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목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표기법일 수가 없다. ‘팬’이 어떤 영어 단어로 변환될 수 있을지 이 표기만으로는 알 수 없다. 아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이 표기를 가지고 영어 단어의 발음으로 변환해 발음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⁶⁾ 이 표기는 한국어 단어 [팬]에 대한 표기로 보아야 한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표기법으로 이해하려면 표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언어를 표기의 대상으로 삼았든 표기의 결과는 결국 한국어 단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표기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표기의 대상이 외국어이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자모 대 한글 자모의 대응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글 자모가 다시 외국어 자모 또는 음소로 변환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6) 일부 사람들이 [fæn]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팬’이라는 표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영어 단어 ‘fan’에 대한 지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기법이 될 수 없다. 여기에는 외래어 표기법의 현행 규범이 갖고 있는 인식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기 중심주의가 그것이다.

현행 표준어와 맞춤법 규정을 자세히 보면 맞춤법이 규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규정집의 순서도 맞춤법이 제일 앞에 나온다. 음성언어가 먼저 있고 음성언어를 시각화하는 것이 문자라고 한다면 음성언어로서의 표준어가 정해지고 표준어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하지만 실제 규정을 살펴보면 이 과정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어 규정이 먼저 나와서 표준어를 제시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맞춤법이 뒤따라 나오는 방식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는 자명하다. 표준어를 제시하는 행위 자체가 문자에 기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소]가 수컷인 소를 의미하는 표준어 발음이라는 것을 음성기호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표준어 규정에서처럼 ‘수소’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표준어 얘기를 할 때 표기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수소’는 표준어 단어이면서 표준 맞춤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혼합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외국어 음소나 자모에 대응하는 음소를 상정하고 이를 다시 한글 자모에 대응시키는 일은 결국 불필요한 과정 하나를 더 포함하는 일이 된다. 외국어 자모나 음소에 한글 자모를 대응시키면 결과적으로 발음과 표기가 동시에 제시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법이 발음법과 무관하다는 것은 외래어 표기법 자체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Ⅲ. 외래어와 표준 발음

임동훈(1996)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이 외래어 발음법의 역할도 한다고 했다. 김선철(2008:213)은 이에 대해 이것이 현상의 기술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표기가 발음

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무시하고 표기를 기준으로 발음을 결정하자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인위성을 띠는 표기와 달리 어떤 어휘의 발음은 언중의 습관 자체이지 표기나 여타 언어 외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고유어나 한자어의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에는 수시로 몰밀듯이 들어오므로 언중이 사용해서 어떤 어형이 우세하게 사용되는 것을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다. 외래어 표기법이 한글 맞춤법과는 별개로 만들어진 이유도 이미 한국어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외래어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들어와서 한국어에 자리 잡게 될 외국어 단어들 때문이다. 이미 한국어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굳이 외래어 표기법이 왜 필요할 것인가. 그 가운데 표준어를 선택하고 그 표준어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면 될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이 만들어진 것은 그것이 이미 들어와서 언중들에게 사용되기 전이나 초기에 표기를 정해 두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임동훈(1996)에서와 같이 표기에 의해 발음이 정해지는 것이다. 표기는 그대로 두고 아무렇게나 발음하도록 놓아두자는 견해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한글이라는 표기 수단을 발음과는 무관한 문자로 사용하자는 주장과 결과적으로 같은 주장이 될 것이다. 한글은 표음문자이며 발음을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가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글의 표음성을 무시하고 언중이 마음대로 발음하도록 놓아둘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는 외국어 단어의 음소에 대해 일대일 대응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한국어의 음운론과 괴리가 생기는 데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한국어 화자가 전혀 발음할 수 없는 표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외래어 표기법이 외국어 단어의 발음을 한국어의 음운론에 적합하게 바꾼 뒤 이를 표기로 옮기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결과는 한국어 음운론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음운론적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이미 외래어 표기법에 한글 자모만으로 표기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분명해진다. 외국어 발음을 위한 새로운 기호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한글 자모를 특이한 음소의 표기 수단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이상 각 자모는 고유

어나 한자어를 표기할 때의 음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음운론적 제약을 상당 부분 지키면서 표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외국어 단어의 음소를 한글 자모로 기계적으로 옮겨 적지 않고 변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f]는 ‘ㅍ’으로 표기하는데 이때 ‘ㅍ’의 발음은 [pʰ]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f]로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b]는 ‘ㅂ’으로 표기하는데 이 ‘ㅂ’은 유성적인 환경이 아니라면 당연히 무성양순파열음을 표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외국어 단어의 음소를 한글 자모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그 발음은 한국어 자음이나 모음 음소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외래어의 발음에 대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발음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한글의 일반적인 쓰임에 대한 부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적용된 한국어의 음운론적 제약은 다양하다.⁷⁾ 음소구조 제약을 보면 한국어에 없는 음소들은 한국어에 있는 가까운 음소들로 변환된다. 위에서 말한 무성순치마찰음 [f]는 유기무성양순파열음 [pʰ]로 변환되어 표기된다. 이렇게 외국어 단어가 한국어의 음소구조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의 음운 제약에 맞게 변환되어 표기된다.

음소 배열 제약은 모두 적용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를 위배하는 표기형을 산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셋백’은 아마도 [센백]으로 발음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표기형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셋백’으로 되어 있다. 평파열음 뒤에 평장애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평파열음 뒤의 평장애음은 경음이 되어야 한다. 이는 매우 강력한 제약이라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외래어 표기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⁸⁾ 다만 경구개음 뒤에는 반모음 ‘y’가 올 수 없는데 외래어 표기법은 이 제약을 반영하여 ‘자, 저, 죠, 주’ 등과 같은 표기를

7) 한국어의 음운론적 제약은 이진호(2005)의 분류를 사용하였다. 최적성 이론에 기반 논의들은 외국어 단어가 어떻게 한국어의 음운론적 제약과 관련하여 변화를 보이는지 기술하였다.

8) 이 제약은 매우 강력하여 한글 맞춤법에서도 자동적으로 경음화가 적용된다고 보아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깍두기’는 [깍뚜기]로 발음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의 일부 표기 방식이 한글 맞춤법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음소 배열 제약을 반영한 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외래어 표기법이 외국어 단어의 음소 대 한글 자모의 대응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⁹⁾

음절 구조 제약은 외래어 표기에 반영되었다. 한국어는 표면 음절에서 초성이나 중성에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어 단어 ‘stamp’는 ‘_’ 삽입을 거쳐 ‘스탬프’가 되는 것이다. 초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오고 중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오기 때문에 모음 ‘_’를 삽입해서 음절구조제약을 위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¹⁰⁾ 또한 음절구조제약에는 음절 초성이나 중성에 오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되는 제약이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중성 위치에는 일곱 개의 자음만 나타나게 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표면 음절에서는 중성 위치에 무성치조파열음이 와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글자는 ‘ㄷ’이 되어야 한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ㄷ’ 대신 ‘ㅅ’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위에서 언급한 ‘셋백’의 경우에는 ‘ㄷ’ 대신 ‘ㅅ’으로 무성치조파열음을 표기하였다. 이는 한글 맞춤법의 정신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글 맞춤법의 제7항은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고 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덧저고리, 돛자리’ 등의 단어가 ‘ㅅ’으로 중성이 표기되는 것이다. 이 역시 그대로 외래어 표기법에 받아들여져 ‘ㅅ’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다만 형태음소론적 교체 양상 때문에 ‘ㅅ’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로봇’의 경우에는 [로보시], [로보슬], [로본또], [로본만] 등과 같이 후행하는 조사에 따라서 교체를 보이게 되는데 이 교체 양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저형을 표기형으로 삼아서 ‘로봇’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외래어 표기법이 단순히 외국어 단어의 음소를 한글 자모로 대응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어 단어가 한국어에 수용되었을 경우에 어떤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보이는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이 외국어 단어의 음소 대 한글 자모의 대응 관계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

9) 물론 이 경우에 음소 대 자모의 대응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해당 외국어 단어에 반모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0) ‘_’만 삽입한 것은 아니다. 마찰음 ‘ㅅ’이나 파찰음 ‘ㅆ, ㅈ’의 경우에는 ‘ㅣ’를 삽입하여 표기하였다.

음운론적 변환 관계를 고려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만 이 고려가 체언의 어간에 국한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것이다.

음절 배열 제약은 이른바 비음화와 유음화 현상과 관련된다. 음소배열 제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진호(2005:74)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음절 배열 제약으로 기술한다.

(8) 후행 음절 초성의 울림도(=공명도)는 선행 음절 종성의 울림도보다 크면 안 된다.

가. 비음 앞에는 장애음이 올 수 없다.

(예) 밥+만→밥만, 믿+는→믿는, 적+는→정는, 떡+만→떡만

나. ‘ㄹ’ 앞에는 ‘ㄹ’ 이외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예) 능+력→능력, 독+립→(독)립→동립, 난+립→날립

위의 예들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절 배열 제약으로 인한 음운 현상이다. 형태소 내부에서는 기저형을 설정할 때 표면형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서도 형태소 내부에서의 음절 배열 제약은 반영하지 않게 된다. ‘건너다’의 어간은 하나의 형태소로 간주되어 ‘건너다’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에는 형태소 내부에도 음절 배열 제약을 적용하지 않은 표기형을 제시한다. ‘먼로’와 같은 어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로보시], [로보술], [로본만] 등과 같은 발음을 존중하여 ‘로봇’이라고 표기한 것처럼 ‘멀로’라고 표기하는 것이 제약을 준수하는 일이 될 텐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먼로’라고 적게 된다. 형태소 내부든 형태소 경계에서든 음절 배열 제약은 강력한 제약이므로 당연히 음운 현상을 유발하게 되므로 ‘먼로’는 [멀로]로 발음될 수밖에 없다. 형태소 경계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한글 맞춤법의 일반적인 원칙대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따로 기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외래어가 음운론적 제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 예로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두음법칙이다. 한자어의 경우에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는데 외래어는 이 제약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하여 국어사전에는 ‘ㄹ’로 시작하는 단어는 모두 외래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는 외래어 표기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기보다 언중

들의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국어 언중들은 외래어에서 ‘ㄹ’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모두 발음하게 되고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이 그러한 경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길게 외래어와 한국어의 음운론적 제약에 대해 기술한 것은 외래어가 발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외래어는 단순히 외국어 단어를 한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어의 음운론적 제약을 위배하지 않는 한국어 단어가 되도록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이 한국어의 음운론을 반영한다면 외래어 표기법이 단순히 표기법이라고 해서 외래어의 발음을 표기와 무관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 외래어 표기법대로 발음하게 되면 그것은 한국어 단어의 발음이 되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대로 외래어를 발음하게 한다면 지금처럼 외래어 발음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IV. 외래어와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 조항 가운데 외래어를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은 많다. 이들 조항에 따라 외래어를 발음하게 한다면 외래어의 표준 발음을 부분적으로라도 정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¹²⁾

(9) 가.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나.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ㅎ), ㅂ(ㅃ, ㅍ, ㅍ, ㅍ)’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11) 반모음 ‘y’나 ‘i’ 앞에서의 ‘ㄴ’ 탈락도 두음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외래어의 경우에는 이 제약도 지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2) 신지영(2006)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발음법이라기보다는 표준어의 표기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김봉국(2008), 김선철(2004), 배주채(2006) 등에서 표준 발음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이진호(2012)에서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다.

- 다. 제19항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 라.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마. 제21항 위에서 지적인 이외의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 바.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ㅂ(ㅍ, ㅃ,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ㅌ, ㅍ, ㅊ’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사.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ㅌ, ㅍ, ㅊ’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 아.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위 조항들의 경우에는 조항의 예에 외래어 용례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15항의 경우는 외래어 가운데 오직 ‘ㅌ’으로 끝나는 단어에 한정된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대표음으로만 종성을 표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ㅌ’은 대표음이 ‘[ㄷ]’이기 때문에 제15항에 해당한다.

제18항의 경우에도 외래어의 예나 외래어와 한자어, 외래어와 고유어의 합성어 예를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제시한 ‘톱낫, 북메이커’는 당연히 ‘[톱낫], [북메이커]’로 발음되므로 외래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덤프트럭만’과 같은 경우는 ‘[덤프트렁만]’으로 발음되어야 한다.

제19항과 제20항은 외래어의 경우에는 형태소 내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햄릿’의 경우에는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햄닛]’으로 발음된다.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면 ‘햄닛’이 되어야 하나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단어의 음소를 한글 자모로 대응하기 때문에 ‘햄릿’으로 표기하고 있다. 제20항의 경우에는 한자어에서도 정확한 규칙을 찾기가 어렵고 외래어의 경우에는 화자마다 발음이 달라지기도 한다. ‘먼로’의 경우에는 [멀로]나 [먼노]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³⁾ 고유어의 경우에는 형태소 내부에는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저형 자체가 이미 ‘ㄴ ㄴ’이나 ‘ㄹ ㄹ’ 연쇄로 주어지고

13) 최혜원(2001:22)에 따르면 ‘[먼로]’라는 발음이 상당수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

표기도 그에 따르기 때문이다. 외래어의 경우에만 형태소 내부에도 ‘ㄴㄹ’ 연쇄의 표기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1항은 위치동화를 비표준발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콘크리트’를 ‘[콩크리트]’로 발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최혜원(2001:18)에서는 ‘ㄴ’으로 발음한 사람이 81명, ‘ㅇ’으로 발음한 사람이 267명으로, 위치동화를 실현한 사람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ㄴ’으로 발음해야 한다.

제23항은 평파열음 뒤의 장애음이 경음이 되는 현상이다. 이는 자동적인 현상이어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각두기’가 그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이들은 표기와 다르게 경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다. 외래어도 이 발음법에 따르면 경음으로 발음해야 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래어 내부뿐만 아니라 외래어와 외래어, 외래어와 한자어나 고유어에서도 이 규칙은 지켜진다. 그러므로 예에 추가하거나 해설에 추가하면 될 것이다.

제28항은 사이시옷에 관한 규정이다. 사이시옷을 첨가하여 표기하지는 않지만 그와 동일한 음운 현상이 생기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외래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와인병’은 사이시옷을 첨가하여 표기하지는 않지만 [와인뽕]이라는 발음이 일반적이다. 사이시옷 현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고유어나 한자어에서도 개별 단어에 따른 현상이어서 사전에 따로 표시를 해 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외래어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현상에 외래어도 포함된다는 기술을 해설에 덧붙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사이시옷을 표기에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있어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것은 외래어에도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사이시옷을 첨가한다는 기술이 전혀 없다. 사이시옷을 첨가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으나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외래어와 외래어, 외래어와 한자어, 외래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첨가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외래어에 사

이시웃을 첨가하여 표기하지는 않아도 사잇소리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페트병’의 경우에는 최혜원(2001:27)에 따르면 [페트병]이라는 발음 보다는 [페트뵙]이라는 발음이 훨씬 더 많다.¹⁴⁾

제29항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일어나는 ‘ㄴ’ 첨가 현상에 관한 것인데 외래어에서도 발견된다. ‘남유럽’이나 ‘북유럽’을 ‘ㄴ’ 첨가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많다(최혜원 2001:28-9). ‘ㄴ’ 첨가 이후 유음화된 예 역시 존재한다. ‘디젤유’는 [디젤류]로 발음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현상 역시 이 조항의 예에 외래어 단어를 넣거나 해설에 넣어서 기술하는 방법으로 표준 발음법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V. 외래어와 표준 발음 정보 표시

차재은(2007)에서는 외래어 발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래어의 발음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표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실제 언중들의 발음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의 문제도 함께 포함된다. 기존의 외래어 표기와 현격하게 다른 경우에는 표기도 바꾸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표기와 발음의 심각한 괴리 현상을 외래어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표준 발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표기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 표기와의 차이가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처리가 될 수 있다.¹⁵⁾

2011년 국어심의회에서 ‘자장면’이라는 표준어 표기에 더하여 ‘짜장면’이

14) 이때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제시하지 않는다.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경우에는 사이시웃을 첨가하는 기준이 있으나 외래어와 한자어의 결합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없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사이시웃을 첨가하는 기준을 제시할 뿐 첨가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하면 ‘페트병’으로 적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15) 차재은(2007:366)에서는 ‘담임’의 발음이 [다뎨]와 [다뎨]의 두 가지가 있고 특히 후자의 사용자가 많으므로 복수 발음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만약 ‘담임’의 표기만 허용하고 ‘단임’ 또는 ‘다뎨’의 표기를 배제한 채 [다뎨]의 발음만 허용한다면 표기와 발음의 괴리라는 다른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표기도 표준어로 인정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¹⁶⁾ 발음과 표기의 괴리만이 문제였다면 ‘자장면’이라고 표기하고 ‘짜장면’이라고 발음하도록 허용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국어 심의회에서는 두 표기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결국 발음과 표기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은 사고의 결과로 이해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표기만 바꾸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의식적으로 [자장면]이라고 발음하려고 노력하고 [짜장면]이라고 발음했다가도 [자장면]이라고 고쳐서 발음했다. ‘자장면’이라는 표기는 발음도 [자장면]으로 강요하게 된 것이고 언중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국어 심의회는 발음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아예 표기를 바꾼 것이다.

이것은 외래어 가운데 표준어를 정하는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짜장면’도 ‘표준어’라고 함으로써 외래어 표준어를 공식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표기의 관점이나 순화의 관점에서 외래어를 접근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표준어의 관점에서 외래어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설명에서는 표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보도 자료에는 표준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외래어의 표준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표준어를 음성 형식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의 표준어 규정과 맞춤법 규정은 서로 얽혀 있는데 외래어의 경우에 표준어 문제에 표기를 포함했다는 것은 외래어에 대해서도 표준이라는 개념 속에 표기가 포함된다는 정책 당국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짜장면’은 표기를 바꾼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두 개의 표준어를 인정한 것이다. 압도적으로 외래어는 표기대로 발음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자장면’이라는 표기는 곧 [자장면]이라는 표준 발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표기에서 ‘짜장면’을 허용한다는 것은 [짜장면]이라는 발음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표준어와 표기를 분리해서 인식하기도 하지만

16) 국립국어원의 보도 자료에는 “짜장면 등 39항목 표준어로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http://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board_id=6&mn_id=19&b_seq=374&pageIndex=1)

이번의 결정은 결국 표준어와 표기가 일정한 한계 속에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표준 표기는 곧 표준어로 연결되고 다시 표준 발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외래어의 발음이 언중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발음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장면’에 대한 정책 당국의 처리는 결국 표기와 발음의 괴리가 커지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래어의 표준 발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표기와 발음의 괴리가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가지 이상의 발음을 허용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을 통해 고유어나 한자어의 표기 대 발음의 괴리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인상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경음화일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조차 경음화를 반영해서 평파열음 뒤에 평장애음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 ‘깍두기’가 그것이다. 실제 발음은 [깍뚜기]라서 표기와 발음에 차이가 생긴다. ‘자장면’도 표기는 그대로 두고 발음은 [짜장면]으로 하게 했다면 그렇게 큰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는 음절 말에 평파열화를 반영해 평파열음이 아닌 종성 표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비음동화와 유음화의 경우에도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것이다. 이들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원래의 표기대로 발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에서 말한 경음화와는 다르다.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경음화도 표기와 발음의 차이에 해당한다. 사이시옷을 추가해서 경음화를 표기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넷가’의 발음을 [넛까/내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포함된다.

모음의 경우에는 ‘외’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 때문에 ‘니’가 두 가지 발음으로 발음될 수 있으며, ‘니’의 경우에도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니’의 경우에도 이중모음이 아니라 ‘ㅣ’나 때로는 ‘개’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형태소를 밝혀서 적는 방식을 택하는 한 표기와 발음이 차이

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많은 경우는 형태음소론적인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경음화는 형태소 내부에도 적용되지만 환경만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어떤 점에서는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한글이 표기와 발음의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규칙에 기반한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글 표기와 발음이 이런 일종의 규칙적인 대응 관계를 가진다면 외래어에 대해서만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의 표기에 여러 가지 발음을 대응시키는 것은 한글의 표기 규범 전통에 배치되는 처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래어의 발음을 현실 발음과 일치시키려고 하더라도 표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복수 표기를 허용하는 쪽이 언중들이 받아들이기엔 자연스럽지 않은가 한다.

외래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표기는 그대로 두고 두 가지 발음을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다만 영어의 유성 파열음이 외래어에서는 평음이 되기도 하고 경음이 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전에 이들 발음을 외래어 각각의 발음을 조사해서 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치조 마찰음 ‘s’으로 표기되지만 경음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표준 발음법에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인 경향을 띤다. 차재은(2007)에서는 어말의 ‘스’는 규칙적으로 ‘쓰’로 소리나고 어중에서는 수의적이라고 했지만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어두에서 ‘_’를 제외한 모음 앞에 올 때는 경음으로 발음을 한다. 그리고 어중에서도 ‘_’ 앞에 올 때는 평음으로 발음하고 나머지 모음 앞에 올 때는 경음으로 발음을 한다. 초성이 자음군일 때, ‘s’와 다른 자음이 연달아 발음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스크린’과 같은 단어는 영어로는 초성에 자음이 세 개 나타나지만 한

17) 김세중(1993)에서도 평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만 실제로는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어에서는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ㅡ’가 삽입된다. 이때 ‘ㅡ’가 삽입된 경우에는 ‘ㅅ’이 경음으로 발음되기보다는 평음으로 발음된다. ‘시스템’의 경우에도 [씨스템]으로 발음되는 듯하다.¹⁸⁾ 이런 경향을 감안한다면 어말의 ‘스’는 [쓰]로 발음하고 어말 이외의 경우에는 ‘스’는 [스]로 발음하지만 ‘ㅡ’ 이외의 모음 앞에 나타나는 ‘ㅅ’은 [쓰]로 발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외래어의 발음에 대한 규범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제정된 어문 규범에는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시도도 없었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외래어에 대해서는 발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규정에서도 또한 사전에서도 외래어의 발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래어의 표준 발음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외래어 가운데 표준어를 골라 제공하는 작업도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어서 표준 외래어가 정해져야 표준 발음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표준 외래어를 정하는 것에 표준 발음을 정하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 외래어를 정하는 작업 자체가 표준 발음을 정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결합 관계에서 발음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표준어형을 정하는 것이 해당 외래어의 표준 발음이기 때문이다.

18) 차재은(2007:383)에서는 ‘시스템’의 발음을 조사한 결과 [시스템]은 안 나타나고, [씨스템]은 100%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반해 최혜원(2001:39)에서는 가운데 음절에 경음 ‘ㅅ’가 나타난 경우가 36명, 평음으로 발음된 경우가 331명이어서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시스템’에 대해서 차재은(2007)의 경우에는 [시스템]과 [씨스템]의 두 가지 발음만 전사되었으나 최혜원(2001)에서는 14가지의 발음형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 좀 더 신뢰할 만하지 않은가 한다.

본고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이 표준 외래어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의 외래어 표기법이 외래어를 적는 법일 뿐이라는 생각도 볼 수 있으나 표기 규범을 만들면서 표준어나 비표준어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 단어나 적기 위한 규정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고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은 표준 외래어를 적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으로 적은 단어들 가운데 순화 대상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관용에 따라 다른 어형이 표준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어형이 표준어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래어 표기법이 표준 외래어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라고 할 수는 없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결국 외래어의 발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쓰여진 대로 발음을 하게 되면 표기와 발음이 일대일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외래어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의 기능도 갖게 된다. 다만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원칙적으로 원어의 음소를 일대일 대응 형식으로 표기에 반영하고 있어서 음운 현상에 따른 발음의 변화는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음운 현상 전체를 고려했다면 쓰여진 대로 발음하게 되어 발음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텐데 원어의 자모나 음소를 그대로 한국어 자모로 대응시켜서 한국어의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표기와는 다른 발음이 나타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발음법에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음운현상은 이미 표준 발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정을 추가하거나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한다면 해설에 외래어도 포함한다는 정도의 기술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규정에 없는 소수의 음운현상만 표준 발음법 규정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 없이 표기와 다르게 발음되기도 하는 외래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복수의 표준 발음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옥미(1996), 「한국어 차용어 음운론에 대한 최적성 이론 분석」, 『국어학』 28, 국어학회, 113-158.
- 강현숙(2002), 「영어 유성음이 차용어에 나타나는 현상 분석」, 『한국어학』 17집, 한국어학회, 25-44.
- 구본석(1999), 「최적성이론에서의 영어 차용어와 모음삽입」,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5:1, 한국음운론학회, 59-77.
- 국립국어원 편(1995), 『한국 어문 규정집』.
- _____(1999), 『표준국어대사전』.
- _____(2010),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 김봉국(2008),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표준어 규정(제2부 표준 발음법)]의 문제점」,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9: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51-174.
- 김상준(1996), 「외래어와 발음 문제」,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62-72.
- 김선철(2000), 「차용어 형성의 음운론적 과정에 대한 검토(1): 영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한글』 250, 한글학회, 43-69.
- _____(2004), 「표준발음법 분석과 대안」, 『말소리』 50, 대한음성학회, 23-39.
- _____(2008), 「외래어 표기법의 한계와 극복 방안」, 『언어학』 16:2, 대한언어학회, 207-232.
- 김세중(1993), 「외래어 표기 규범의 방향」, 『언어학』 15, 한국언어학회, 61-76.
- _____(1996),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비판 분석」,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원, 161-174.
- 김옥영(2009), 「국어 표준 발음법과 음운 제약」, 『언어와 정보 사회』 11,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9-67.
- 김정우(2008),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번역학 연구』 9:2, 한국번역학회, 67-93.
- 김창진(2009), 「한국어 전통을 파괴하는 외래어 표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세계한국어 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집』, 87-107.
- 김태미(2002), 「영어 차용어의 대응이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하수(1999),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247-259.
- 김형배(2007), 「현행 한국어 어문규정의 문제점: 국어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2, 한민족문화학회, 31-58.
- 민아영(2005), 「영어 차용화 과정의 음운론적 특성: 모음 삽입 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우(1998), 「현대국어 영어 차용어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진(2008), 「외래어에 대한 된소리 표기 금지 원칙의 문제점과 대안 탐색」, 『문법교육』 9, 한국문법교육학회, 185-205.
- 배주채(2006), 「표준발음법의 이상」, 『어문연구』 3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9-92.
- 송철의(1996), 「표준어, 표준발음과 국어 생활의 실제」, 『새국어생활』 6:2, 국립국어연구원, 165-172.
- 신지영(2006), 「표준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133-158.
- 연규동(2006), 「‘짜장면’을 위한 변명: 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읽는다」,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181-205.
- 유만근(1988), 「외래어의 영어화와 방송의 표준발음 수범」, 『국어생활』 14, 국어연구소, 80-86.
- 이상도·이영순(2007), 「영어 차용어에 미치는 음운 외적인 요소」, 『현대 영어교육』 8, 현대영어교육학회, 178-95.
- 이석재·최유경(2001), 「영어 차용어의 모음 삽입에 대한 통계적 관찰과 그 의의」,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7, 한국음운론학회, 153-176.
- 이진호(2005), 「국어의 음운론적 제약 체계」, 『어문연구』 3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73-203.
- _____(2008), 「국어 표준발음법의 제정 과정」, 『어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173-203.
- _____(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 이홍식(2001),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성심어문논집』 23, 성심어문학회, 124-148.
- _____(2007),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임동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연구원, 41-61.
- 임홍빈(1997),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최태영 외, 『한국어문학논고』, 태학사, 725-749.
- 정희원(2002), 『외래어 표기 용례집』, 국립국어연구원.
- _____(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원.
- 조남호(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1, 2』, 국립국어원.
- 차재은(2007), 「외래어 표준 발음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35, 한국어학회, 363-390.
- 최유경(2000), 「영어 차용어에서 모음 삽입: 음절 말 폐쇄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원(2001), 『외래어발음실태조사』, 국립국어연구원.

허 춘(2001), 「우리말 표준발음법 보완」, 『어문학』 74, 한국어문학회, 69-117.

홍혜정(1997), 「최적 이론으로 분석한 한국어 속의 영어 차용어의 음운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HO, H.(1998), “English Loanwords and Syllable Structure”,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4, 273-289.

HIRANO, H.(1994), “A Constraint-based Approach to Korean Loanwords”, *Language Research* 30, 707-739.

KANG, Hyunsook(1996), “English Loanwords in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 21-48.

_____(1999), “Affixation to English Loanwords in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5:2, 291-307.

KANG, Y.(2003), “Perceptual Similarity in Loanword Adaptation: English Postvocalic Word-final Stops in Korean”, *Phonology* 20, 219-273.

LEE, H.(2001), “English Loanword Phonology in Korean”, *Language Research* 37, 177-200.

LEE, J.(2004), “The Reanalysis of Epenthetic Vowels in English Loanwords in Korean”, *The Association for Korean Linguistics* 22, 355-83.

LEE, P.(1995), “Korean Loanword Phonology: An Optimality Perspective”,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20, 121-152.

OH, M.(1992), “Palatal Consonants, Labial Consonants, and Vowel Epenthesis in Korean Loanword Phonology”,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17, 141-161.

_____(1996), “Linguistic Input to Loanword Phonology”,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 117-26.

SILVERMAN, Daniel(1992), “Multiple Scansions in Loanword Phonology: Evidence from Cantonese”, *Phonology* 9:2, 289-328.

YOO, H.(1996), “A Constraint Based Analysis of Korean Loanword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 147-167.

❖ ABSTRACT

On the Regulation for Pronunciation of Loanwords in Korean

Yi, Eun-gy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to decide pronunciation of loanwords in Korean language. There has not been a regulation for pronunciation of loanwords in Korean language. Even the dictionary published by th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any information about the pronunciation of loanwords. In this paper, some actual solutions are suggested for the pronunciation of loanwords. Korean language has Regulations of Standard Korean, Korean Orthography, Regulations on Hangeul Transcriptions on Loanwords and Pronunciation Methods of Standard Korean. These language standards could help to decide pronunciation of loanwords. Some pronunciations which could not be regulated by them must be presented in the standard pronunciation dictionary. For example, glottalization rule of 's' in many loanwords could be presented in the description of each loanword in the dictionary. However the pronunciation of loanwords must be similar to the spelling. If various pronunciations are allowed to one spelling, then people will be so confused by the discrepancy between pronunciation and spelling of loanwords.

Key Words

외래어, 표준어,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표준 발음법
loanword, standard Korean, regulations on standard Korean, Korean orthography,
regulations on Hangeul transcriptions on loanwords, pronunciation methods of
standard Korean

논문접수일: 2015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